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5(금) 10:00

제2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90호
- 나. 제 출 자 : 김경완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3. 17.
- 라. 회부일자 : 2022. 3. 17.

2. 제안이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정하여 금천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주거복지사업 (안 제 5조)
- 라. 재정지원(안 제6조)
- 마.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2. 3. 17. ~ 3. 22 .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시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조례상의 정의(안 제2조)

관련 법률에 따라 주거복지대상자를 명시한 것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언급된 대상자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2)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금천구 지역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주거복지 지원 수립 계획을 마련함

3) 주거복지사업 (안 제 5조)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명시함

4) 재정지원(안 제6조)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5) 사무의 위탁(안 제7조)

주거복지 사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함

다. 검토의견

- 「주거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특히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서울시 지자체 제정 현황 : 6개 구

(2022. 3. 21 현재)

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생활보장과	2021-12-31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2019-12-31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2013-03-21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환경도시국 주택과	2019-04-30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2021-09-23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2020-07-20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 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